

장애인의 就業形態와 所得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에 대한 分析

李善雨

본 연구는 취업장애인의 취업형태와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로짓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의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는 연령, 가구주 여부, 일상생활 도움필요정도, 결혼상태, 장애의 원인, 장애유형, 생활보호대상여부 등이었으며 나타났다. 그 중에서 기혼자가 미혼이나 이혼·사별보다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서 자영업은 배우자의 도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장애의 원인에서는 산업재해인 경우 비산업재해보다 임금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은 재활을 통해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장애유형에서는 신체장애가 내부장애보다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현재 자영업의 주 직종이 농어업이기 때문에 내부장애인으로서는 체력적으로 자영업에 종사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장애인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연령, 성별, 가구주 여부, 교육연한, 결혼상태(이혼·사별), 일상생활 도움정도, 외부불편정도, 장애기간, 직업 등이었는데, 특히 주목할 요인은 교육과 직업이다. 교육은 취업형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근로소득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장애인도 교육을 받는 것이 경제적 자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직업에서는 사무직이 모든 다른 직업에 비해 높은 근로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서 앞으로 사무직의 직업훈련과 직종개발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주요용어: 장애인, 취업형태, 근로소득, 자영업, 임금노동

筆者: 本院 責任研究員

▶ 원고를 검독하여 주신 卞裕榮 研究委員과 金美坤 副研究委員께 감사드립니다.

I. 序 論

장애인의 취업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여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취업을 개선하는 노력이 장애인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취업은 현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고, 다양한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은 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있어서 그 효과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장애인의 취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취업형태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취업의 형태를 크게 임금고용과 자영업으로 나눌 때,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자영업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정기원 외, 1991; 이선우, 1997; 변용찬 외, 2001). 장애인이 자영업을 특히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여겨진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생산성이 낮고 동료 직원들과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고용을 꺼리는 등 취업시 차별이 있을 뿐 아니라, 일단 고용이 된 후에도 승진에서의 차별이 상당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장애인은 취업의 어려움과 직장에서의 어려움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해 임금고용보다는 자영업을 선호하고 있다.

장애인이 자영업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집에서 직장까지 이동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이다. 이는 결국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게 이동권이 제한되어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자영업이라는 특정한 취업형태를 선호하는 이유는 자영업이 갖고 있는 기회의 측면보다는 임금고용이 갖고 있는 제한 때문으로 판단된다. 취업형태가 장애인의 근로양식과 소득에 영향을 미쳐서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취업형태에 대한 분석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근로자에게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은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다. 근로소득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의 정도와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직업 재활정책은 단순히 장애인의 취업을 활성화하는 것만으로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가능한 한 많은 장애인이 취업을 통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임으로써 적절한 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이 임금노동과 자영업 중에서 취업의 형태와 소득을 결정하게 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또한 이 분석을 기초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취업형태를 제안하고, 취업장애인의 소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就業形態와 所得의 理論的 背景

1. 人口學的 理論

장애인의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가구주 여부, 결혼상태, 가구원수와 같은 인구학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성별에 있어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으로 인해 남성은

사회생활, 여성은 가정생활을 한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또한, 여성은 온순하고, 의존적이며, 경쟁을 싫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성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이며 경쟁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에서는 여성이 불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이 자영업에 종사하게 될 때에도 가사에 대한 책임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자영업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역할에 대한 차이에서 남성이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득에 있어서도 교육연한을 고려한 후에도 성차별에 의해 남성은 여성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구에서의 지위도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가구주인 경우에 자신 외에 다른 가구원의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구주는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득에 있어서는 임금노동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수당으로 인해, 자영업의 경우 가구원에 의한 무급가족노동으로 인해 비가구주에 비해 더 높은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은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추정된다. 도·소매상, 전문직 등의 자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기술, 경험, 자본 및 명성을 쌓을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Borjas and Bronars, 1988; Butler and Herring, 1991; Lee, 1995; 이선우, 1997). 또 소득에 있어서도 연령이 많을수록 경험과 기술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득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결혼상태도 경제활동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인데,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으면 자신의 소득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도 모아서 자영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처음에 자영업을 시작하여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불안정할 때에도 배우자가 계속 임금노동에 참여함으로써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노동력의 측면에서도 기혼자들이 자영

업에 종사하는 데 유리하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기혼자들에게 배우자들은 임금은 많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일하며 믿을 수 있는 종업원이 된다. 따라서 기혼자일수록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학적 요인은 가구원수이다. 취업형태에 있어서 가구원수가 많으면 그만큼 무임금 가족노동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고 기대된다. 따라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자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 소득에 있어서도 가구주 여부와 마찬가지로 이유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人的 資本 要因

교육은 자영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관리 기술을 제공할 수 있어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장애인의 자영업은 영세자영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임금노동에 종사할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교육은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적 자본으로 교육수준이 증가하면 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어수봉, 1996; 권유경, 1998; 유동철, 2001).

한편, 직업훈련도 장애인의 인적 자본으로 중요한 변수인데 현재로는 직업훈련을 받는 장애인이 너무 적어서 취업형태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 障礙관련 要因

장애유형이 장애인의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는데, Bordieri, Dreamer & Taylor(1997)와 Dreamer & Bordieri(1985), Garske & Stewart

(1999), West & Parent(1995) 등은 정신장애인들이 가장 심각한 고용에서의 차별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신장애는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에 있어서도 장애유형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에 대한 인식으로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시각, 언어, 지체장애인의 소득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어수봉, 1996).

장애정도도 장애인의 취업형태와 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애정도가 심하면 사회적 차별이 심하고 이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임금노동보다는 자영업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애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소득도 장애정도가 심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득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변수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장애등급이 한 변수인데, 우리나라에서 장애등급은 아직 객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등급의 판정은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에 따라 동등한 장애정도에 대해서도 장애등급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등급은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에만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장애인에게만 해당이 되고, 비등록 장애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장애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몇 가지 장애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들이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의 도움필요정도, 외부활동의 불편정도가 장애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일상생활의 도움이 적게 필요할수록, 외부활동의 불편이 적을수록 임금노동에 참여하고, 소득이 많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의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으로 장애원인과 장애기간을 들 수 있는데, 장애원인은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와 비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는 일정기간의 재활을 거친 후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많다.¹⁾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은 임금노동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은 산업재해 이전의 임금노동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득에 있어서도 비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의 소득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경험, 그리고 자본의 축적을 위해 임금노동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았을 때, 장애기간은 길수록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득도 장애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4. 職業관련 要因

장애인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요인은 직업관련요인이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직종으로 어떤 직종이냐에 따라 소득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직종에 따라 필요로 하는 교육수준과 기술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평균 소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소득은 취업형태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는 자영업이 임금노동에 비해 소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자영업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서 감추어진 소득까지 포함했을 경우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에서는 자영업 종사자의 소득을 얼마나 정

1) 근로기준법 30조 2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9조에는 “노동부장관은 장해급여를 받은 자의 장해정도를 참작하여 보험가입자가 재해근로자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취업형태에 따라 소득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5. 社會制度的 要因

사회보장제도가 장애인의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부조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일정 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공공부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생활보호제도하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여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면 소득액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생계보호비를 받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액에 따라서 생계보호비를 차등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

Ⅲ. 就業障碍人の 分析

1. 就業障碍人の 特性

취업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먼저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의 구성을 보면, 여성은 21.7%, 남성은 78.3%로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취업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주 여부를 살펴보면, 비가구주가 28.0%, 가구주가 72.0%로 가구주가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31.4%로 가장 많으며, 50대가 26.6%, 30대가 23.7%의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60대가 9.0%로 20대보다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평균 연령은 45.6세로 나타났다. 취업

장애인의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기혼이 75.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혼이 14.7%, 이혼 또는 사별이 9.9%를 나타내고 있다.

<表 1> 就業障碍人の 人口社會學的 特性

(단위: 명, %)

변 수	범 주	빈 도	비 율
성별	여성	262	21.7
	남성	947	78.3
가구주 여부	비가구주	338	28.0
	가구주	871	72.0
연령	15~20세	15	1.2
	21~30세	98	8.1
	31~40세	286	23.7
	41~50세	380	31.4
	51~60세	321	26.6
	61~65세	109	9.0
결혼상태	미혼	177	14.7
	기혼	912	75.5
	이혼·사별	119	9.9
교육	무학	117	9.7
	초등학교	375	31.1
	중학교	191	15.8
	고등학교	387	32.1
	대학 이상	137	11.4
주관적 계층	상층	2	0.2
	중상층	98	8.1
	중하층	471	39.0
	하층	637	52.7
생활보호대상 여부	비생활보호대상	1,059	87.6
	생활보호대상	150	12.4

취업장애인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고등학교가 3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초등학교가 31.1%, 중학교 15.8%, 전문대학 이상이 11.4%였으며, 무학도 9.7%나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취업장애인의

평균 교육연한은 8.61년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장애인들이 주관적으로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계층의 분포를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계층이 하층으로, 52.7%를 차지하고 있어서 절반 이상의 취업장애인이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중하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취업장애인도 39.0%에 달하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취업장애인이 자신의 계층을 낮게 보고 있다. 취업장애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은 12.4%로, 10명 중 1명이 생활보호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 2〉 就業障碍人の 連續變數 統計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연 령(세)	45.6	10.9
총가구원수(명)	3.42	1.39
총가구소득(만원)	121.0	86.7
교육연한(년)	8.61	4.52
장애기간(년)	23.07	16.83

취업장애인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이 59.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이 14.7%, 청각장애인이 11.2%로 상당히 많았다. 반면에, 신장장애는 1.4%, 정신장애는 1.5%, 심장장애는 1.9%로 상당히 적었다. 취업장애인의 장애원인을 보면, 기타 후천적 원인이 31.6%로 가장 많았고, 질병이 29.3%, 산업재해 15.7%, 교통사고 11.5% 등으로 많았다. 반면에, 출생시 원인은 1.2%, 선천적 원인은 5.0% 등으로 상당히 적었다.

취업장애인의 직종을 살펴보면,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가 2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단순노무직 근로자가 2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근로자 및 판매근로자가 19.4%,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가 10.8%로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는 0.4%에 불과하며, 전문가도 2.1%,

기술공 및 준전문가 3.6%, 사무직원 5.0% 등으로 대단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表 3〉 就業障碍人的 障碍관련 特性

(단위: 명, %)

변 수	범 주	빈 도	비 율
장애유형	지체	715	59.1
	뇌병변	43	3.6
	시각	178	14.7
	청각	135	11.2
	언어	31	2.6
	정신지체	49	4.1
	정신	18	1.5
	신장	17	1.4
	심장	23	1.9
장애의 원인	선천적 원인	60	5.0
	출생시 원인	15	1.2
	질병	353	29.3
	교통사고	139	11.5
	산업재해	189	15.7
	기타 후천적 원인	381	31.6
	원인불명	68	5.6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급여는 91.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는 분야의 월평균 급여를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단순노무직은 57.1만원에 불과하고, 농어업은 74.1만원이다. 이와 같이 취업장애인은 월평균 급여가 가장 낮은 직업에 대부분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월평균 급여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에, 상용근로자의 직종별 분포와 월평균 급여를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직종은 사무직원(24.5%)과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21.5%)였다. 또한 좋은 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는 5.5%로 취업장애인이 동일 직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의 10배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도 10.4%로 취업장애인의 비율 2.1%보다 5배 가까운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취업장애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직종에서는 그 비율을 보면, 단순노무직이 6.5%로 취업장애인의 단순노무직 비율보다 17% 포인트 이상 낮은 비율이며,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는 0.2%로 취업장애인의 비율에 비교하면 1/10에 불과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表 4〉 就業障礙人の 職業관련 特性

(단위: 명, %, 만원)

변수	범주	취업장애인			상용근로자	
		빈도	비율	월급여	비율	월급여
직종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5	0.4	256.7	5.5	231.2
	전문가	25	2.1	190.0	10.4	178.6
	기술공 및 준전문가	43	3.6	122.8	14.2	149.1
	사무직원	61	5.0	137.8	24.5	117.1
	서비스근로자 및 판매근로자	234	19.4	99.9	5.3	100.1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342	28.3	74.1	0.2	108.0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	131	10.8	112.3	11.9	120.4
	장치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78	6.5	103.1	21.5	117.0
	단순노무직 근로자	289	23.9	57.1	6.5	81.0
	종사상의 지위	자영업자	468	38.7	91.6	
고용주		40	3.3	159.7		
상용근로자(전일제)		291	24.1	112.1		
상용근로자(시간제)		14	1.2	59.9	N.A.	N.A.
임시근로자		61	5.0	74.2		
일용근로자		194	16.0	53.4		
무급가족종사자		141	11.7	63.8		

資料: 변용찬 외,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노동부, 노동통계 DB 검색, 2000.

월급여를 비교해 보면,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전문가는 오히려 취업장애인의 월급여가 상용근로자의 월급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장애인도 월급여가 높은 직종에서는 전체 상용근로자와

비교해도 충분히 높은 월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와 단순노무직에서는 취업장애인의 월급여가 상용근로자의 월급여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의 월급여는 108.0만원, 상용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월급여는 81.0만원이었으며, 전체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31.4만원으로 취업장애인의 91.8만원에 비해 1.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장애인의 종사상의 지위를 보면, 자영업자가 38.7%로 가장 많으며, 전일제 상용근로자가 24.1%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일용근로자가 16.0%, 무급가족종사자도 11.7%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시간제 상용근로자가 1.2%에 불과하여 장애의 특성상 시간제 근무를 필요로 하는 신장장애 등 일부 장애유형의 취업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급여는 고용주가 159.7만원으로 가장 높고, 상용근로자(전일제)가 112.1만원으로 자영업의 91.6만원보다 높았다. 이는 장애인들의 경우 자영업이 영세하다는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53.4만원에 불과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就業形態別 分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취업형태는 자영업, 고용주, 전일제 상용근로자, 시간제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로 나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취업형태를 자영업과 임금노동으로 단순하게 구분하여 분석한다. 자영업에는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되며, 임금노동에는 전일제 및 시간제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분류할 때, 일부 특성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은 있겠지만 일단 자영업과 임금노동의 두 분류는 어느 정도 자신의 선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다른 분류는 단순히 자신의 선택 외에 자신의 능력과 관련된 부분으로 판단된다.

취업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취업형태에 따라 비교해 보면, 임금노동의 남성 비율이 81.4%로, 자영업의 남성 비율 75.7%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이 자영업보다는 임금노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가구주 여부는 취업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表 5〉 就業障礙人的 就業形態別 人口社會學的 特性

(단위: 명, %)

변 수	범 주	임금노동	자영업	통계치
성별	여성	104(18.6)	158(24.3)	$\chi^2=5.904$ p=0.015
	남성	456(81.4)	491(75.7)	
가구주 여부	비가구주	149(26.6)	189(29.1)	$\chi^2=0.944$ p=0.331
	가구주	411(73.4)	460(70.9)	
연령	15~20세	13(2.3)	2(0.3)	$\chi^2=86.590$ p<0.0005
	21~30세	71(12.7)	27(4.2)	
	31~40세	164(29.3)	122(18.8)	
	41~50세	173(30.9)	207(31.9)	
	51~60세	110(19.6)	211(32.5)	
	61~65세	29(5.2)	80(12.3)	
결혼상태	미혼	126(22.5)	51(7.9)	$\chi^2<63.662$ p<0.0005
	기혼	366(65.4)	546(84.2)	
	이혼·사별	68(12.1)	51(7.9)	
교육	무학	38(6.8)	79(12.2)	$\chi^2=31.903$ p<0.0005
	초등학교	148(26.5)	227(35.0)	
	중학교	86(15.4)	105(16.2)	
	고등학교	208(37.2)	179(27.6)	
	전문대학 이상	79(14.1)	58(9.0)	
주관적 계층	상층		2(0.3)	$\chi^2=8.598$ p=0.035
	중상층	45(8.1)	53(8.2)	
	중하층	197(35.2)	274(42.2)	
	하층	317(56.7)	320(49.3)	
생활보호대상 여부	비생활보호대상	482(86.1)	577(88.9)	$\chi^2=2.223$ p=0.136
	생활보호대상	78(13.9)	72(11.1)	

취업형태에 따라 연령의 분포를 비교해 보면, 임금노동에서는 40대의 비율이 30.9%로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29.3%, 50대가 19.6%, 20대가 12.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60대는 5.2%, 10대는 2.3%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영업에서는 50대가 3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대가 31.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30대는 18.8%에 불과하며, 반대로 60대는 12.3%나 차지하고 있어서 임금노동과 대비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대도 4.2%에 불과하여 임금노동과 크게 대조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결혼상태를 취업형태에 따라 비교해 보면, 임금노동에서 미혼의 비율은 22.5%에 달하고 있지만, 자영업에서 미혼의 비율은 7.9%에 불과했다. 또 임금노동에서 이혼·사별의 비율도 12.1%에 달하고 있지만 자영업에서 이혼·사별의 비율은 7.9%이다. 반면에, 기혼의 비율은 임금노동에서는 65.4%에 불과하지만 자영업에서는 84.2%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에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영업, 특히 영세자영업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족노동이 중요하며,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형태별 교육의 분포를 비교해 보면, 임금노동에서는 고등학교가 37.2%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가 26.5%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영업에서는 초등학교가 35.0%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가 27.6%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에서도 임금노동에서는 14.1%로 자영업의 9.0%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주관적 계층의식을 취업형태에 따라 비교해 보면, 상층과 중상층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하층과 하층에서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중하층에 속한다는 응답이 임금노동에서는 35.2%이지만 자영업에서는 42.2%로 자영업에서 높았고, 반대로 하층에 속한다는 응답은 임금노동에서 56.7%, 자영업에서 49.3%로 임금노동에서 높았다. 따라서 자영업의 장애인이 느끼는 계층의식이 임금노동의 장애인 계층의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형태에 따른 생활보호대상 여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취업형태에 따라 장애유형을 비교해 보면, 장애유형의 분포는 취업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장애의 원인은 취업형태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산업재해의 비율이다. 임금노동에서 산업재해의 비율은 22.1%에 이르고 있으나 자영업에서는 10.2%에 불과하다. 이는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 장애인이 되기 전의 직장에 계속 근무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되더라도 계속 채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산업재해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중요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질병과 기타 후천적 원인으로 인한 장애의 비율은 임금노동에서 각각 25.7%, 29.7%였으나 자영업에서는 32.4%, 33.3%로 약간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表 6〉 就業障礙人的 就業形態別 障礙관련 特性

(단위: 명, %)

변수	범주	임금노동	자영업	통계치
장애유형	지체	340(60.7)	375(57.8)	$\chi^2=7.066$ $p=0.530$
	뇌병변	16(2.9)	27(4.2)	
	시각	73(13.0)	105(16.2)	
	청각	61(10.9)	74(11.4)	
	언어	14(2.5)	17(2.6)	
	정신지체	24(4.3)	25(3.9)	
	정신	10(1.8)	8(1.2)	
	신장	11(2.0)	6(0.9)	
장애의 원인	심장	11(2.0)	12(1.8)	$\chi^2=35.501$ $p<0.0005$
	선천적 원인	22(4.0)	38(1.9)	
	출생시 원인	8(1.4)	7(1.1)	
	질병	143(25.7)	210(32.4)	
	교통사고	64(11.5)	75(11.6)	
	산업재해	123(22.1)	66(10.2)	
	기타 후천적 원인	165(29.7)	216(33.3)	
	원인불명	31(5.6)	37(5.7)	

취업형태별로 직종을 비교해 보면, 임금노동에서는 사무직, 기술직, 단순노무직이 각각 16.6%, 26.6%, 47.3%를 차지하고 있으나 자영업에서는 이들 직종이 6.3%, 9.3%, 3.7%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자영업에서는 서비스 및 판매근로직,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직이 각각 29.6%, 51.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임금노동에서는 두 직종이 각각 7.5%, 2.0%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볼 때, 자영업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은 농업과 어업으로 실질적으로 자영업의 특징을 갖기 어려운 직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表 7〉 就業障碍人の 就業形態別 職業관련 特性

(단위: 명, %)

변수	범주	임금노동	자영업	통계치
직종	사무직원	93(16.6)	41(6.3)	$\chi^2=651.668$ p<0.0005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	42(7.5)	192(29.6)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11(2.0)	331(51.1)	
	기술직	149(26.6)	60(9.3)	
	단순노무직 근로자	265(47.3)	24(3.7)	

취업형태별로 일상생활 도움정도를 비교해 보면, 임금노동에서는 ‘모두 혼자할 수 있다’는 비율이 76.7%에 달하고 있으나, 자영업에서는 62.1%에 불과하다. 또 외부활동 불편정도에서도 ‘거의 불편하지 않다’는 비율이 임금노동에서는 42.6%에 이르고 있으나 자영업에서는 32.7%에 불과하였다.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또 다른 변수인 주관적 건강 상태에서도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매우 건강하다’와 ‘건강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임금노동에서는 58.0%였으나, 자영업에서는 50.9%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자영업에 종사하는 장애인이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장애인보다 장애정도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는 중증장애인은 직장으로의 이동이 더 어렵고, 직장에서의 차

별이 심하기 때문에 자영업을 더 선호한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영업은 특히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서는 취업형태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表 8〉 就業障碍人の 就業形態別 障碍관련 特性

(단위: 명, %)

변 수	범 주	임금노동	자영업	통계치
일상생활 도움정도	모두 도움 필요	5(0.9)	4(0.6)	$\chi^2=38.685$ $p<0.0005$
	대부분 도움 필요	5(0.9)	32(4.9)	
	일부 도움 필요	57(10.2)	99(15.3)	
	대부분 혼자	63(11.3)	111(17.1)	
	모두 혼자	429(76.7)	403(62.1)	
외부활동 불편정도	전혀 외출 못함	2(0.4)	2(0.3)	$\chi^2=28.832$ $p<0.0005$
	매우 불편	57(10.2)	134(20.6)	
	약간 불편	207(37.0)	234(36.1)	
	불편하지 않은 편	55(9.8)	67(10.3)	
	거의 불편하지 않음	238(42.6)	212(32.7)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34(6.1)	42(6.5)	$\chi^2=7.007$ $p=0.072$
	나쁘다	201(36.0)	277(42.7)	
	건강하다	285(51.0)	297(45.8)	
	매우 건강하다	39(7.0)	33(5.1)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매우 부정적	36(6.5)	45(7.0)	$\chi^2=4.088$ $p=0.394$
	부정적	283(51.3)	295(45.7)	
	보통	179(32.4)	227(35.2)	
	긍정적	52(9.4)	75(11.6)	
	매우 긍정적	2(0.4)	3(0.5)	

사회생활에서의 차별의 경험 정도를 취업형태별로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취학시 차별, 직장생활 차별, 지역사회생활 차별이었으며, 학교생활 차별, 결혼 차별, 취업시 차별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취학시 차별에서는 ‘매우 많다’는 비율이 임금노동에서

는 20.8%였으나 자영업에서는 34.0%로 상당히 더 많았으며, 반대로 ‘거의 없다’는 비율이 임금노동에서는 52.7%였으나 자영업에서는 38.7%로 낮았다. 따라서 취학시 차별은 자영업 종사자들이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表 9〉 就業障碍人の 就業形態別 社會的 差別經驗 程度

(단위: 명, %)

변 수	범 주	임금노동	자영업	통계치
취학시 차별	매우 많다	43(20.8)	81(34.0)	$\chi^2=13.914$ p=0.003
	많은 편이다	24(11.6)	37(15.5)	
	가끔 있다	31(15.0)	28(11.8)	
	거의 없다	109(52.7)	92(38.7)	
학교생활차별	매우 많다	58(24.8)	73(31.5)	$\chi^2=4.235$ p=0.237
	많은 편이다	37(15.8)	43(18.5)	
	가끔 있다	47(20.1)	39(16.8)	
	거의 없다	92(39.3)	77(33.2)	
결혼차별	매우 많다	83(25.2)	92(25.6)	$\chi^2=5.135$ p=0.162
	많은 편이다	72(21.8)	98(27.3)	
	가끔 있다	56(17.0)	43(12.0)	
	거의 없다	119(36.1)	126(35.1)	
취업시 차별	매우 많다	153(31.7)	160(34.0)	$\chi^2=4.604$ p=0.203
	많은 편이다	110(22.8)	94(20.0)	
	가끔 있다	61(12.6)	44(9.3)	
	거의 없다	159(32.9)	173(36.7)	
직장생활 차별	매우 많다	107(20.2)	124(24.9)	$\chi^2=9.132$ p=0.028
	많은 편이다	111(21.0)	77(15.5)	
	가끔 있다	85(16.1)	65(13.1)	
	거의 없다	226(42.7)	231(46.5)	
지역사회생활 차별	매우 많다	47(8.4)	89(13.8)	$\chi^2=12.387$ p=0.006
	많은 편이다	64(11.5)	80(12.4)	
	가끔 있다	94(16.9)	123(19.1)	
	거의 없다	352(63.2)	352(54.7)	

직장생활 차별에서는 ‘매우 많다’는 비율이 임금노동에서는 20.2%였으나 자영업에서는 24.9%로 자영업에서 높았고, ‘거의 없다’는 비율도 임

금노동에서 42.7%, 자영업에서 46.5%로 자영업에서 높았다. 이는 직장 생활에서 차별의 경험이 '매우 많은' 자영업 종사자의 경우 현재의 자영업에서 차별을 받았다기보다는 주로 과거의 직장에서 차별을 받고 자영업으로 직종을 전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직장생활에서 차별의 경험이 '거의 없는' 자영업 종사자는 처음부터 직장생활을 자영업으로 시작한 경우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생활에서의 차별은 '매우 많다'는 임금노동에서는 8.4%에 불과하지만 자영업에서는 13.8%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거의 없다'는 임금노동에서는 63.2%, 자영업에서는 54.7%로 오히려 자영업에서 낮다. 이는 결국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명확하게 겉으로 드러난 장애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장애정도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자영업에 종사하는 장애인들이 임금노동의 장애인보다 장애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생활에서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취업형태에 따라 연령의 차이를 보면, 임금노동 장애인의 평균 연령은 42.4세, 자영업 장애인의 평균 연령은 48.3세로 자영업 장애인의 평균 연령이 더 높았다. 따라서 자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에, 총 가구원수는 임금노동이 3.42명, 자영업이 3.41명으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자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가족노동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일반적인 주장과 관계가 없었다. 총 가구소득에서는 임금노동과 자영업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임금노동 장애인의 총 가구소득은 평균 130만 3천원이었으나 자영업 장애인의 총 가구소득은 112만 9천원에 불과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장애인가구의 소득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장애정도를 보여주는 일상생활 도움정도, 외출활동 불편정도, 건강상태에서는 모두 임금노동 장애인이 자영업 장애인보다 장애정도가 경증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임금노동 장애인이 일상생활 도움정도

가 낮고, 외출활동 불편정도도 낮으며, 건강상태가 더 좋다는 것이다.

<表 10> 就業障碍人の 就業形態別 連續變數의 平均 比較

변 수	범 주	평 균	통계치
연령(세)	임금노동	42.4	t=-9.737 p<0.0005
	자 영 업	48.3	
총가구원수(명)	임금노동	3.42	t=0.020 p=0.984
	자 영 업	3.41	
총가구소득(만원)	임금노동	130.30	t=3.432 p=0.001
	자 영 업	112.92	
교육연한(년)	임금노동	9.35	t=5.348 p<0.0005
	자 영 업	7.97	
장애기간(년)	임금노동	20.90	t=-4.178 p<0.0005
	자 영 업	24.92	
일상생활 도움정도	임금노동	4.62	t=5.422 p<0.0005
	자 영 업	4.35	
외출활동 불편정도	임금노동	3.84	t=4.550 p<0.0005
	자 영 업	3.54	
건강상태	임금노동	2.59	t=2.321 p=0.020
	자 영 업	2.49	
비장애인의 장애인 인식	임금노동	2.46	t=-1.538 p=0.124
	자 영 업	2.53	
차별정도	임금노동	2.92	t=0.770 p=0.441
	자 영 업	2.87	

마지막으로,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차별 경험의 정도에서는 임금노동과 자영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장애인의 취업형태별 근로조건 비교에서는 월 근로소득은 임금노동과 자영업이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당 근무일수에서는 예상되었던 바와 같이 임금노동 장애인이 5.39일, 자영업

장애인이 6.14일로 자영업 장애인의 주당 근무일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일 근무시간과 시간당 근로소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자영업 장애인은 임금노동 장애인보다 더 오래 근무하면서 임금노동 장애인과 비슷한 근로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表 11〉 就業障礙人的 就業形態別 勤勞條件의 平均 比較

변 수	범 주	평 균	통계치
월 근로소득(만원)	임금노동 자 영 업	85.9 88.4	t=-0.554 p=0.580
주당 근무일수(일)	임금노동 자 영 업	5.39 6.14	t=-9.617 p<0.0005
1일 근무시간(시간)	임금노동 자 영 업	9.48 9.70	t=-1.094 p=0.274
시간당 근로소득(만원)	임금노동 자 영 업	1.92 1.76	t=1.259 p=0.208

3. 就業障礙人的 就業形態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에 대한 分析

취업장애인이 임금노동과 자영업이라는 두 가지의 취업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로짓(Logit)분석을 시도하였다. 종속변수인 취업형태에서 0은 '임금노동', 1은 '자영업'으로 부호화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연령, 총 가구원수, 성별, 가구주 여부, 교육연한, 장애기간, 일상생활 도움정도, 외출활동 불편정도, 건강상태, 결혼상태, 장애의 원인, 장애의 유형, 차별경험 정도,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직업훈련, 생활보호대상자 여부 등을 사용하였다. 성별에서는 여성을 0, 남성을 1로 부호화하였으며, 가구주 여부에서는 비가구주를 0, 가구주를 1로 부호화하였다. 또 일상생활 도움정도, 외출활동 불편정도, 건강상태는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부호

화하였다. 결혼상태는 두 개의 더미변수로 만들었는데, 기혼을 기준범주로 하고 미혼, 이혼·사별 두 변수를 만들었다. 장애의 원인에서는 모든 장애의 원인을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와 산업재해로 인하지 않은 장애로 나누어, 후자를 0, 전자를 1로 부호화하였다. 장애의 유형에서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신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를 정신장애, 신장장애와 심장장애를 내부장애로 나누고, 신체장애를 기준범주로 하여, 정신장애와 내부장애의 두 더미변수를 만들었다.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부호화하였다. 직업훈련에서는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를 0,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를 1로 부호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여부에서는, 비생활보호대상자를 0,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포함)를 1로 부호화하였다.

장애인의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연령, 가구주 여부, 일상생활 도움필요정도, 결혼상태, 장애의 원인, 장애유형, 생활보호대상 여부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높아질수록 임금노동보다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가구주일수록 임금노동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자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가구주일수록 임금노동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상생활에서 도움필요도가 많을수록 자영업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 자영업 종사자들이 이동이 더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에 종사한다는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혼상태에서는 미혼이나 이혼·사별이 기혼보다 임금노동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자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애의 원인에서는 산업재해가 비산업재해보다 임금노동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은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영업에 종사할 필요성이 줄어들

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유형에서는 내부장애가 신체장애보다 임금노동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현재 자영업이 주로 사무직이 아니라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농어업 분야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내부장애로는 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시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임금노동에 참여하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생활보호대상자는 비생활보호대상자보다 임금노동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表 12〉 就業障碍人の 就業形態에 대한 로짓分析

변 수	계 수	EXP(B)
상수	1.2663	
연령	0.0400***	1.0408
가구원 수	-0.0508	0.9505
남자	0.1594	1.1728
가구주	-0.7454**	0.4745
교육연한	-0.0304	0.9701
장애기간	0.0015	1.0015
도움필요도	-0.3777***	0.6854
외부활동불편도	-0.0184	0.9818
건강상태	0.0848	1.0885
결혼상태(기준범주=기혼)		
미혼	-1.1865***	0.3053
이혼·사별	-1.0222***	0.3598
산업재해	-0.9286***	0.3951
장애유형(기준범주=신체)		
정신장애	-0.2641	0.7679
내부장애	-0.8287*	0.4366
차별경험 정도	-0.1116	0.8944
비장애인의 장애인 인식	0.1220	1.1297
직업훈련	0.1416	1.1521
생활보호대상	-0.5510**	0.5764

-2 Log Likelihood=1410.5, Model chi square=207.6 df=18

4. 就業障礙人的 勤勞所得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취업장애인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여기에서는 종속변수로 취업장애인의 시간당 근로소득에 대한 대수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로는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사용했던 성별, 가구주 여부, 결혼상태, 장애원인, 장애유형, 직업(사무직이 기준범주, 사무직에는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원, 서비스직에는 서비스근로자 및 판매근로자, 농어업에는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기능직에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와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노무직에는 단순노무직 포함), 자영업 여부(전일제 및 시간제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기준 범주, 자영업에는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등이 더미변수로 포함되었으며, 연령, 총가구원수, 교육연한, 장애기간, 도움필요도, 외부활동불편도, 건강상태, 연령의 제곱 등이 연속변수로 포함되었으며, 연령의 제곱은 연령과 임금의 관계가 선형일 가능성 때문에 포함되었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이 모형은 전체 변량의 31.3%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독립변수는 연령, 성별, 가구주 여부, 교육연한, 장애기간, 일상생활 도움정도, 외부활동 불편정도, 결혼상태 중 이혼·사별, 연령의 제곱, 직업 중 서비스, 농어업, 기능직, 노무직 등이었다. 각 독립변수에 대해 설명하면, 연령은 연령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이 높았으며, 연령의 제곱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갖고 있어서, 연령과 근로소득의 관계가 선형이 아니라 곡선이며, 근로소득은 일정한 연령까지는 근로소득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지만 일정한 연령이 지나면 근로소득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은 여성보다 남성이 근로소득이 높았으며, 가구주여부에서는 가구주가 비가구주보다 근로소득이 높았다.

교육연한도 높을수록 근로소득이 높게 나타나, 비록 교육연한이 취업 여부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근로소득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表 13〉 就業希望障礙人の 時間當 勤勞所得에 대한 回歸分析

변수	계수	표준화계수	t 값
상수	-1.855		-4.424***
연령	0.075	1.011	4.520***
총가구원수	0.029	0.050	1.636
남자	0.170	0.079	2.074*
가구주	0.218	0.111	2.753**
교육연한	0.043	0.236	6.687***
장애기간	-0.004	-0.089	-2.982**
도움필요도	0.058	0.061	2.000*
외부활동불편도	0.047	0.066	2.199*
건강상태	-0.032	-0.028	-0.969
결혼상태(기준범주=기혼)			
미혼	-0.124	-0.053	-1.402
이혼·사별	-0.203	-0.076	-2.508*
산재	-0.071	-0.033	-1.144
장애유형(기준범주=신체)			
정신장애	-0.095	-0.021	-0.749
내부장애	-0.028	-0.006	-0.223
연령 ²	-0.0008	-1.005	-4.635
직업(기준범주=사무직)			
서비스직	-0.571	-0.281	-6.440***
농어업	-0.601	-0.318	-6.084***
기능직	-0.249	-0.123	-2.979**
노무직	-0.493	-0.267	-5.666***
종사상 지위(기준=임금)	-0.024	-0.015	-0.380

F = 20.156, df = 21, 882; R 제곱 = 0.324

한편, 장애기간은 근로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장애기간이 길수록 근로소득은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일상생활의 도움필요도와 외부활동 불편정도는 근로소득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건강상태는 근로소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은 이혼·사별에 비해 근로소득이 높아서 결혼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업은 사무직과의 비교에서 다른 모든 직업이 사무직에 비해 근로소득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자영업 여부는 근로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준화계수를 비교할 때 독립변수 중에서 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연령의 제곱, 직업, 교육연한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의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무직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개발해야 하며, 또 교육연한이 임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結 論

장애인이 취업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연령, 가구주 여부, 일상생활 도움필요정도, 결혼상태, 장애의 원인, 장애유형, 생활보호대상 여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일상생활 도움필요정도, 결혼상태, 장애의 원인에서는 예상했던 바와 같은 방향으로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가구주 여부, 장애유형에서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가구주 여부에서 가구주가 비가구주보다 임금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자영업과 임금노동의 근로소득의 격차가 자영업에 유리하지 않은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유형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영업의 주 직종이 농어업이라는 사실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

수들 중에서 주목해야 할 변수는 교육연한과 직업이다. 교육연한은 장애인의 취업형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장애인의 근로소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이다. 또한, 직업은 사무직이 다른 모든 직업에 비해 근로소득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연령이 장애인의 근로소득에 이들 변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연령은 정책적 개입이 비교적 어려운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자영업이 임금노동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오히려 직업의 선택에서 보면 임금노동이 더 나은 선택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업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이 현재보다 나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무직의 훈련을 통해 사무직 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 권유경, 「한국 장애인의 피고용여부와 월임금수준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변용찬 외,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어수봉, 「한국의 장애인 노동시장 분석」, 『장애인고용』 봄호, 1996.
- 이선우 외, 『장애유형별 고용현황 및 직업재활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이선우,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33, 1997.
- 정기원 외, 『장애인실태조사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 Bordieri, J.E., Dreamer, D.E., & Taylor, D.W., "Work Life for Employees with Disabilities: Recommendations for Promotion",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40, 1997.

- Borjas, G.J., and Bronars, S.G.,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Immigration", *Science*, 235(4789), 1988.
- Butler, J.S., and Herring, C.,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in America: Toward an Explanation of Racial and Ethnic Group Variations in Self-employment", *Sociological Perspectives*, 34(1), 1991.
- Dreamer, D.E., & Bordieri, J.E., "Hiring Decisions for Disabled Workers: the Hidden Bias", *Rehabilitation Psychology*, 30(3), 1985.
- Garske, G., & Stewart, G.G., "Stigmatic and Mythical Thinking: Barriers to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for Persons with Severe Mental Illness", *Journal of Rehabilitation*, 65(4), 1999.
- Lee, S.W., "The Ethnic Character of Self-employment: An Analysis of Nine Ethnic Groups in the State of California Utilizing the 1990 Census Dat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95.
- West, M.D., & Parent, W.S., "Community and Workplace Supports for Individuals with Severe Mental Illness in Supported Employment", *Psychosocial Rehabilitation Journal*, 18(4), 1995.

Summary

A Study of Factors Affecting the Types of Employment and Earnings of Disabled Workers

Sun-woo Le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types of employment and earnings of disabled workers by using regression and logit analyses based on *2000 National Survey of Disabled Population*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result of these analyses showed that age, status in a household, level of help needed for daily activities, cause of disability, type of disability, and status in the Livelihood Protection System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types of employment of disabled workers.

Variables that affected the earnings of disabled workers were age, gender, status in a household, educational attainment, marital status, level of help needed for daily activities, level of discomfort in outside activities, period of disability, and occupation. Married disabled workers were found to be more likely to engage in self-employment than their unmarried, separated, or divorced counterparts do, signifying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spouse in self-employment activities. In the case of the cause of disability, industrially disabled workers were more likely to engage in wage employment than those having a non-industrial disability do, indicating that the former group has a higher tendency to return to their former posts through rehabilitation programs. Meanwhile, workers having a physical disability were found to have a higher tendency to engage in self-employment compared to those with internal disabilities. This may be because

large part of current self-employment jobs involves agriculture and fishery activities that require a high degree of physical endurance that most people with internal disabilities lack.

One of the most interesting findings in this study is that educational attainment affected (positively) on the earnings of disabled workers, but not on their types of employment. Thus, educational attainment is regarded as an important factor for disabled workers to lead an independent life. On the other hand, occupation was found to be a very significant factor on the earnings of disabled workers. In addition, disabled workers in white-collar jobs were paid much higher in comparison with other disabled workers, emphasizing the need for additional development of, and training for, white-collar jobs.